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9. 11. 1.(금) 10:36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 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표철수 상임위원 (1인)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36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19년도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전차 회의록 및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차기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보고안건 가>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티브로드 및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와의 법인 합병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지난 5월 9일 과기정통부는 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우리 위원회에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7월 19일에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심사 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10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신청내용입니다.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사항이므로 신청주체는 방송사업자인 (주)티브로드와 그 자회사인 (주)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 되겠습니다. 이 두 방송사업자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와 법인 합병을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입니다. 변경 전·후 현황은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개요에 대한 현황도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계획(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심사기준(안) 및 평가방식입니다. 심사기준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하여 6개 심사사항, 9개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심사사항별 심사항목은 <표>를 참조하시고 세부 심사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방식입니다. 심사위원이 심사항목별 주요 심사내용의 각 사항을 5단계의 척도로 평가한 후,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50점 이상 획득하였을 경우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건부과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원칙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로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미디어 분야 2인, 법률 분야 2인, 경영·경제·회계 분야 2인, 기술 분야 1인, 시청자·소비자 분야 1인 등 분야별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총 9인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는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입니다. 기존 기본계획에서 의결하신 바와 같이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관련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관련단체 등 심사위원 구성 관련 세부 사항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일정은 2박 3일간 합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방통위에서 의결한 심사계획(안)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제출서류와 과기부 사전동의 요청내용 등을 검토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계획(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심사 관련 세부사항과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등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사업자 제출자료 등에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기간 중 신청법인 및 존속법인의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종료 후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와 사전동의 조건 등 건의사항을 반영한 심사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이를 참고하여 사전동의 여부 및 부과 조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을 접수해 주시면 관련단체에 심사위원 추천 의뢰를 11월 초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 요청이 있는 이후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보완한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의결한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료 후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전동의 여부 및 조건부과 여부 등을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동의 심사계획(안)과 기본계획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보고된 안건은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자를 합병하는 첫 사례로 과기부의 합병 승인 심사를 위해서 방통위에 사전동의 요청 시에 적기에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계획(안)을 미리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35일의 제한된 기일 안에 사전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려면 사전 준비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사계획의 핵심은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일 것입니다. 주요 심사사항과 심사항목 등은 사무처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해 왔던 사안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주요 심사내용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하면 평가 방식의 경우에 재허가 아닌 변경허가는 보통 가/부(可否)의 방식들, 즉 허가나 변경허가에 있어서 변경허가는 가/부(可否)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계획(안)을 보면 항목별 배점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변경허가 내용이 통신방송사업자 간 합병이라는 사실상 재허가 수준의 중대 사안이라고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보시면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재허가에 준해서 할 수도 있게끔 문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별도의 심사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심사계획을 작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평가방식을 배점방식으로, 그래서 평가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변경허가가 승인되면 합병법인은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 약 780만명, 시청점유율 23.9%를 차지하게 됩니다. 1위 사업자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 31.3%와의 격차가 크게 줄어듭니다. 유료방송업계는 이번 합병에 이어서 LGU+의 CJ헬로 인수까지 완료가 되면 유료방송시장에서 이통 3사 점유율이 80%에 육박하게 되는데 통신시장 지배력이 유선방송시장에도 전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통사가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이 포함된 결합상품을 내놓으면서 가입자 고착화가 현실화가 되고, 요금인상을 불러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의 우려를 감안한 심사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세부 심사 기준을 보면 합병이 방송 플랫폼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즉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 및 플랫폼사업자 간 경쟁제한 여부, 요금인상은 가능성,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들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잘했고, 전문 심사위원과 함께 철저한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전국사업자와 합병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피합병법인의 23개 케이블 TV 권역의 지역채널 운영방안도 심사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과 통신사업자 간의 합병이기 때문에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잘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통신사업자 간 합병을 통해서 지역채널 콘텐츠 투자는 물론 지역민의 참여프로그램 확대, 재난방송 강화 등 케이블텔레비전의 품질이 높아지고 합병 시너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앞서 허 옥 위원님이 상세하게 잘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지난 7월에 우리가 의결했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사항을 보고받는 자리 같은데 재허가와 변경허가가 조금 조건이 다릅니다. 변경허가의 경우 약식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안이 중대하고 또 첫 케이스니까 본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래서 우리가 심사할 때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과기정통부보다는 우리의 주무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잘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지역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통신업자와 지역SO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혹시 지역성 또 방송분야가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붙임>자료를 보니까 주요 심사 내용 배점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한 배점이, 특히 합병법인 최대주주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배점이 40점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표>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도 공익성 실현 가능성, 또 적법성 이 항목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청자 권익보호에 대한 항목은 굉장히 많아서 전체 220점 배점인데 최대주주 공적책임 실현에 대한 배점은 40점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기본적으로는 항목별 배점 원칙에 따라 20점 내지 30점씩 배정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총 380점 중에 40점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추가로 더 받을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보완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심사위원단이 꾸러지면 거기에서 배점은 또 조율이 가능합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닙니다. 이 배점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항목에 '의무형 상품 제공 실적 및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점을 실적을 몇 점으로 할지, 계획을 몇 점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심사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배점 자체는 원칙대로 갈 것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왜냐하면 통신 법인이 방송을 흡수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통신사업자의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방송사업에 대한 자세, 또 지역성을 어떻게 구현 할 것인가, 방송의 공적책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배점이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통신사업자가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세로

입하는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배점이 저는 너무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지난번에 했고, 심사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결을 우리가 또 하지 않습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과기정통부에서 사전동의 요청서가 날아오면 그때 의결할 텐데, 이것을 전문가 자문을 더 받아서 공적책임을 최대주주로부터 물을 수 있는 항목이 정교하게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오늘은 보고사항이라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더 반영하고 검토를 거쳐...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라고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다만,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목 외에도 큰 의미에서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지역성 부분으로 뒤에 있고, 그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접근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큰 의미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 반영해서 그리고 전문가 자문 등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항목별 배점이라는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선 항목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히 공익성 실현 가능성 20점, 또 방송법 등을 잘 지키고 있느냐 20점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을 묻는 항목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문회의를 통해 한번 들어보시고요.

○ 양한열 방송정책국장

-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 항목을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이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심사평가 방법 형태로 해서 좀 더 세분화되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재량권을 심사위원회에 얼마큼 줄 것인가 부분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세요. 그다음에 지역채널은 소위 지역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우리 심사에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침 배점을 보니까 6개 항목에 180점 배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높은 배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 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특히 합병 이후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특히 방송은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SO들은 비정규직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합병 반대 내지는 고용불안을 해소하라는 집회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는, 특히 비정규직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특히 사업주의 고용계획을 잘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사 23개 권역별로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이 운영되고 있고, 또 아무래도 통신사업자가 볼 때 방송인력에 대해 이렇게 비효율적인 조직인가, 방송을 잘 모른다고 볼 때, 그래서 많이 수익을 내기 위해 인력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인력들이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봐서 그런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야 지역SO들이 앞으로 계속, 아마 이것이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의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방송을 쪽 합병해 나가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될 텐데, 자칫하면 방송계 고용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노사 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굉장히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혹시 배점 항목에 어떤 부분을 넣어야 할지, 좀 더 자문을 받아서 보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말씀하신 합병법인 및 최대주주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 부분은 법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에 관한 부분이나 조직에 관한 공적책임 부분들이 항목별로 녹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배점을 조정하기 때문에 한 군데가 올라가면 다른 군데가 또 내려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렇지요. 조절해야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형평성을 맞춰서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안건은 보고 사안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나 허 욱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유료방송사업자들의 합병 건에 대해 사전동의 심사위원장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가 다른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사전동의제 자체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점도 있지만

저는 사무처와 심사위원들께서 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셨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규제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공적책임 그다음에 지역성 문제, 특히 이용자 보호 문제, 그리고 공정경쟁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봐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심사기준에도 나와 있지만 미디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 즉 산업의 활성화나 이를 위한 업계의 구조조정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위원회가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최근 ‘타다’ 같은 경우 시장 내에서 사업자집단 간 자율적인 조정으로 대안이 나왔으면 좋은데 이러한 것들까지 상업적 잣대를 들이대서 오히려 정부에서 혁신 성장의 기조나 시장의 혁신의지를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디어 시장은 근본적인 구조변동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시장의 트렌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러한 국내·외적인 흐름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에도 잘 맞춰서 우리가 심사하고, 합병에 대해 포지티브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이나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저희가 당부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사 문제와 같은 것들도 잡음이 없이, 즉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성 구현의 경우 케이블은 지역 밀착 매체입니다. 이 지역 밀착 매체를 전국단위의 사업자인 IPTV사업자가 인수를 하면 당연히 지역성 위축에 대한 우려는 지역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당국에서도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역성 구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가격인상으로 인한 시청자들과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들은 우리가 심사나 점검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 주어야 할 정도의 수준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도 잘 참고하셔서 사전동의 심사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 고려해서 심사계획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보고안건 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추진배경은 2000년 방송법 개정에 따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 참여 방송사업자는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신청요건 및 절차 등 방송사별로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시청자권익보호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의결을 6월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부터 8월까지 방송사 및 협회 대상 가이드라인(안) 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42개 방송사업자 및 방송협회, 케이블TV방송협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도입 경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정 목적입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요건과 절차, 채택료 지원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안내하여 더 많은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법정 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입니다. 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전체 방송시간의 50% 범위 안에서 100분의 20 이상 편성하여야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방송하여야 합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방영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 기금으로 방송채택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관해 신청 대상과 요건,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방송법 제2조의3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신청 요건으로는 정기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방송사업자의 방송채택료 일부 부담과 3인 이상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로는 매년 초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한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금 지급 방법 및 전년도 실적 우수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우대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채택료 지급사항입니다. 투명한 채택료 지급과 보다 많은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일한 시청자에 대해 연간 지급 채택료를 600만원으로 정하고,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또한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 지원 방지와 동일 프로그램에 대한 중복 방송 또는 다수 방송사를 통한 중복방송에 대해서는 최초 방영분에 대해서만 지원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운영 조건으로는 사업의 성실 수행 원칙과 관련 법령 등 준수, 더 많은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 편성을 권고하고, 시청자를 위한 안내문 게시와 프로그램 심사 결과 통보 및 제작지원 논의 표시 등에 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것인데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 '일몰제 확대 적용 원칙'에 따라, 시행일 기준으로 매 3년 단위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보고를 한 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이후 이행 점검할 계획입니다. <붙임>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있으면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 보고서 같지만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참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과장님께서 중재를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나온 이야기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에는 일반 시청자들이 방송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 전문 옴부즈맨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각 지역의 다양한 시청자미디어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편성·방영해 주는 방송사업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 조정이 그렇게 썩 수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처에서 잘 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단적으로 그것이었지요. 과장님, 보시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이 가이드라인만 지키자는 쪽으로 소극적으로 사업자들이 나올 경우 오히려 활성화하는 데 더 제약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채택료 지급 문제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자들이 해석해서 운영해 준다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잘 참고해서 이후에 시행하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방송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자 주권 강화와 권익 보호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송 참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도입 이후 참여하는 사업자가 지난 2001년 1개사에서 올해는 70개사로 늘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보면 방송채택료 지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들 또 이해관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 신청자격의 제한이라고 하면 이것이 마치 대단한 제한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채택료 지급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정리하려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붙임>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4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중복 지원 방지와 프로그램 내용 과다 중복 방지라고 나왔는데 한정된 채택지원금을 가지고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참여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취지입니다.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미 2001년부터 19년 정도 흘렸는데 이것이 순수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아니고, 방송을 업으로 하는 전문방송사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채택료를 지급하는 것은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SO와 위성에는 보통 분당 4만원에서 6만원씩 정도의 채택료를 지급하고 있고, KBS 같은 경우 법정무방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평가를 해서 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채택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택료에 대해 순수 시청자가 아니고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 보다 많은 시청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을 제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수 시청자라고 하더라도 초창기 때 걸리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 대구 케이블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채택료를 지원받고, 한 두어 달 있다가 광주케이블이나 울산케이블에 가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받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재단을 통해 매년 그것을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송사에서 인식하고 잘 거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방송사에서 또는 동일한 방송사에서 여러 번 방송됐을 때 이것을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군데서 여러 사업자에게 방송되는 것은 권장할 일이고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채택료를 지급하는 것은 첫 번째 방송분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이 가이드라인에 담게 된 것입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혼선을 빚었던 사안들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와 운영의 효율화가 2가지 목적이 잘 달성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라디오나 SO 또 위성사업자에게는 이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나가는데, 법정 편성 대상인 KBS 외에 MBC나 SBS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지금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적극적인 권고를 통해 지역MBC에서 상당수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받아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MBC, 목포MBC, 여수MBC 등 대다수 지역MBC에서는 이것을 정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역민방들은 어떻습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지역민방은 광주방송과 부산방송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타 지역민방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제가 왜 여쭙보느냐 하면 지역성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활용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영될 경우에 방송평가에서도 배점이 있지요?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한 부분들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마추어들이 만들긴 하지만 방송 제작에 대한 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고, 또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방송의 작품성이나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광고가 붙는 이런 영업을 해야 하는 민영방송에서는 채택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활성화하는 방안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점점 작품의 수준이 올라가겠지요. KBS는 법정사업자니까 놓아두고, MBC나 SBS 또 지역민방에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을 보면 정기편성 원칙으로 하고, 방송사업자 3인 이상 외부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눈에 띄는데 운영위원회가 지원 대상 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내부와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운영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시청자가 만든 프로그램을 방송사에 접수하였을 때 정규 편성시간보다 훨씬 많은 분량이 접수 되었을 때 방영순서라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 반사회적인, 반인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하기 사전에 제작한 사람과 이야기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고,

방송사 내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법적 취지들을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질이 아무래도 전문 방송제작자가 만든 것 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방통위에서 전국에 시청자미디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시설과 장비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방송사와 연계해서 참여프로그램을 출품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그러면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직접 방송에 참여해서 제작해서 일종의 등용문 비슷하게 이런 곳에 방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은 방송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해서 방송을 편성하는 메커니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심사라는 말이 꼭 적합한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담당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라는 취지로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을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가이드라인에 올라온 것이 지금까지 이런 운영위원회가 없었습니까?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대부분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어서...

○ 김석진 부위원장

- 명시를 했다?

○ 신승한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가이드라인에 이 내용을 담게 되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알겠습니다. 중복방송에 대해 '최초 방영분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 권고하도록 가이드라인에 적시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다.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초고속인터넷분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초고속인터넷분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이용자보호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초고속인터넷분야)」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및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해 초고속인터넷분야의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시행하기 위해 보고드립니다. 주요 경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통신 서비스 관련 민원사례를 분석하고, 작년에는 이동통신분야의 이용자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마련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인터넷분야의 피해구제기준(안)을 검토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한 연구반을 구성하여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용자보호 주관이었던 지난 10월 17일에 초고속인터넷사업자 9개사와 이용자 맞춤형 피해구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피해구제기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기준(안)은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 주요 민원 유형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입 단계로는 설치 지연의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가 협의된 장비 설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고지한 설치비용과 관련해서는 최초 고지한 설치비용 이외 현장에서 추가로 요금을 청구할 경우에 금액을 환불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 요금할인 등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취소하고 할인반환금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용단계입니다. 서비스의 품질불량과 관련해서 서비스 품질측정 사이트에서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된 결과,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 속도에 미달한 경우가 4일 이하일 경우에는 당일 요금을 면제하고, 5일 이상일 때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할인반환금을 면제하거나 장애발생일만큼 요금 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거나 누적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경우 할인반환금을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월 48시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폭 축소해서 24시간 이상으로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설치와 관련해서는 협의된 장비 설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할인반환금 면제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연일수만큼 월 이용요금에서 면제하는 것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해지 단계입니다. 해지 단계에서 장비 반환금 또는 이전 설치비의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면제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최초에 안내된 예상 할인반환금보다 실제 청구된 할인반환금이 더 큰 경우 과납 할인반환금을 환불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실종·군입대로 인한 해지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약정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할인반환금 없이 해지가 즉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군입대 같은 경우에 이번 피해구제기준(안)에서 처음 도입이 된 경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사·이민의 경우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약정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할인반환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의 경우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을 면제하고, 서비스 제공지역이긴 하나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반환금을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민과 관련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할인반환금을 50%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시행은 즉시하도록 하고, 통신사별로 이를 이용

약관이나 또는 고객응대매뉴얼에 반영하는 것은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피해구제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상임위원

- 이번 안건은 이용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분쟁유형을 가입, 이용, 해지 3단계에 따라 11개로 나누고, 각 유형별 분쟁 해결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행정 혁신 사례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피해구제기준(안) 마련을 위해서 방대한 민원사례를 분석한 뒤에 연구반 운영을 통해 쟁점을 분류하고 소비자 전문가들과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자와 협약을 도출해 낸 것은 적극 행정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초고속인터넷분야의 대표적인 이용자의 민원사항이었던 인터넷 품질 불만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의 속도 측정 방법과 해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한 단독 거주 청년들의 군입대로 인한 인터넷 해지 피해를 해소하였고,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장애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도 의미가 큼니다. 이밖에도 이용자 해지와 관련되어서 이용이나 해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던 고지 안 된 장비 반환금이나 이전 설치비 청구 또한 설치비용 추가 청구, 중요사항의 미고지나 할인반환금의 과다 청구 이런 사안들의 분쟁 발생 시에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증빙사항, 해결기준을 구체화해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피해구제기준은 향후 방통위에 접수된 이용자 민원과 분쟁 처리 시에도 적용될 수 있어서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이나 분쟁 업무처리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피해기준이 실적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보고한 바와 같이 통신사의 이용약관이나 고객 응대 매뉴얼에도 정확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 관련된 제반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1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22분 폐회 】